건축사협회에 바람

Wishes for the KIRA

姜鋼暾 / 신동아건축사사무소
by Kang, Kang-Chul

◈

姜鋼暾

필자는 58년 전북생으로 80년 부산산업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신동아건축사사무소(인천) 를 개설하여 자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천에 가까운 建築士들이 등록, 개업하여 국민들에게 건축물을 설계하여 주고있고, 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단체로 건축사법 6장 규정에 의한 建築士協會가 있다. 이 협회가 생긴 목적은 사법 제31조에 있는 바와 같이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과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벌써 협회가 창립된지 20여년이 지나 6.25이후 파괴된 도시의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현재까지의 건축기반을 조성키 위해 열심히 뛰어 온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나은 建築環境을 조성키 위해, 또한 협회의 생긴 목적을 충분히 이루기 위해, 몇가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건축사 협회가 어떤 機能이 있어야 될 것 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현재의 기능수행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건축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교류, 친목등을 도모하는 기능이다. 등록, 도서신고, 협회원 명단 배부와 같이 별문제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둘째, 정보의 媒介機能이 있다. 특히 관공서에서 나오는 업무관련 공문서를 입수,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이다.

세째, 건축사들의 협회로서 회원의 權益을 보호, 증진시키는 기능이다. 각 개인의 회원으로서 청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집적된 권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끝으로 건축문화의 발전과 기술연구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첫째 사항은 여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 가자.

둘째 情報의 媒介機能에 대하여,

건축사협회로 통지되는 관련 공문서는 빠짐없이 회원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선 건축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배포된 내용이 얼마나 部分的인가를 느낄 수 있다. 설계에 임하여 각종 법규와 통지된 공문서만으로 허가에서 준공까지 완벽하게 처리되는 일은 별로 없다. 건설부와 각 道市, 郡廳 등은 나름대로의 행정지침을 수없이 양산해 내고 있어 일단 허가 서류를 넣게 되면 그때까지 잠복해 있던 수많은 지침들이 쏟아져 나와 수정사항과 첨부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며 때로는 반려되고, 가끔은 완전히 건축 불가능한 경우에 이르게도 한다. 또한 등록 건축사는 어느 한 지역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어느 일이고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 획득 가능범위는 정해져 있어 他支部나 他分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해당지역 회원들은 나름대로 많은 공문서를 접수했으나, 기타지역 사무실은 이에 대한 통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협회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회원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보관,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문서 이외에도 허가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行政指針事項을 조사하여 해당지역 건축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타지역 회원도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해야된다. 전국에는 14개 支部와 50개에 이르는 分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집된 정보자료는 각 분소끼리 교환하여 각 지역별로 분류해 둠으로써, 어느 회원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세째의 기능인 건축사의 權益을 保護 增進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언듯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권리나 이익의 면에서 별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창작권, 경제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侵害 또는 不利益을 당하고 있다. 먼저 創作의 권리 부분에 있어 설계자는 건축주와 허가관청으로부터 거의 무방비의 침해를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건축사 본인에 있으며, 각자가 상당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사를 전문가로 인식해 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과 관공서의 각종 심의와 협의과정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은 많은 부분이 建築士協會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다. 각종 매스컴에 자랑할만한 건축물이 소개될 때, 施工者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辨도 같이 이야기되나 設計者는 어느 구석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것에 대해 협회는 대사회적 발언을

강화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협회 내부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기획물을 작성 각 메스컴에 홍보하여야 하고, 독립기념관과 같은 민족적 건축물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기간동안 이에 대한 건축적 비평이 사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한다. 放送과 新聞社의 문화면을 이용하여 건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며, 국민에게 가장 근접한 예술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또한 각종 법규와 행정지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가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美觀審議를 비롯한 각종 심의제도에 있어 설계자가 직접 잠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현장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심의기준을 만들어 창작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이랄 수 있는 건물들은 별일없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창작성 있고 약간 개성있는 건물은 이웃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너무 복잡하다, 단순하게 하라는 등 어떤 기준이 없는 '任意대로'의 심의를 하고 있다. 또 郡協議를 보면 신청인이나 건축사가 해당기관의 출입조차 금지되어 있고, 모든 민원서류에 정해져 있는 처리기간이라는 것도 없어, 일단 접수해 놓으면 하염없이 되돌아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러한 부조리한 행정제도는 任意運營을 낳게되며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를 가져오므로, 협회는 행정의 임의성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지침에 의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건축사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事務所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랄 수 있는 경제적인 권익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設計費 수준이 참다운 건축적 설계를 하기에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웬만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몇 건 처리해 가지곤 사무소의 운영이 안된다. 따라서 많은 건수를 수주해야 겨우 損益分岐点을 넘으며, 그나마 성실한 설계를 위해 인력을 투입하면 경제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대충 許可用圖書 수준에서 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개업건축사에게서 실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업무 수주에만 매달리도록 하며, 계획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건축사보에 일임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피해는 건물주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87년 시행하는 實積會費 산출용 공사비 산출단가를 보면 붉은벽돌 조적조로 25평 주택을 지을 때 평당 27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며,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이 평당 49만원의 공사비로, 10층이 넘는 철골조 업무시설이 평당 63만원이면 공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물론 이 금액이 공사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괜스레 정해놓은 土協單價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일전에 공사비 예산이 10억에 달하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는데, 건축주측이 건축사협회의 實績會費算出用 單價에 맞추어 설계비를 산출하니, 공사금액이 4억원대로 떨어져 버렸고 이에따라 설계비는 원래 금액의 55% 수준 밖에 받지 못했다.

이러한 단가를 정하려거든 현실 공사비에 맞춰야 하며, 실적회비등이 상승하거든 해당 비율을 낮춰 조정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가 건축가로 참다운 활동을 하기 위하여 수주활동보다 계획 및 설계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부분인 建築物의 質的 向上의 기능면을 살펴보자. 현재 협회에 몇개 硏究委員會가 설치되어 있고 기획적인 보고서 등을 발간하기도 하며 '건축사'지를 통하여 많은 논문과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제 설계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충당 면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협회의 資料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회원이 기증한 도서나 보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건축에 관련된 모든 도서와 각종 논문, 작품들이 총괄적으로 수집 정리되어 회원에게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필자가 87년 봄에 국내 건축잡지 두가지를 선정 그 내용을 분류하여 보았다. 각 논문류와 작품들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건축론, 사무실, 전시장, 은행…… 등등, 연면적으로 분류하여 500㎡, 1,000㎡, 1,500㎡…… 등등, 건축면적으로, 대지면적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를 외장재료별로 구분하다보니 비록 두 가지 월간지만 택했지만 이 자료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필자의 목표로는 건축주가 얼마의 대지에 어떤 건물을 몇층 몇평으로 지을 때, 그리고 외장재료는 무엇일 때, 현재 소개되어 있는 유사자료들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너무 방대한 것이어서 일개 작은 사무소가 해낼 수 없다는 걸 안 것이다.

이런 작업을 건축사협회가 수행해 주어야 한다. 건축사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유사한 設計例나 관련 논문등을 수집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 시간적인 절약을 가져와 훨씬 향상된 건축설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 建築設計의 質을 높이는 필수품으로 제품에 대한 카다록과 사양시방서가 있다. 그나마 근래에 와서 일부 카다록을 집성 판매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하며, 현재 국내의 카다록 배포방법은 각 개인이 직접 전달 받는 원시적인 것이다. 건축사협회는 국내외 資材業者를 수배하여, 각 건축사사무소의 주소록이 포함된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무실 숫자만큼 카다록을 접수, 일주일 혹은 한달 단위로 모아 회원에게 발송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은 건축사지에 작품이나 논문을 실은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건축기술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한가지 더 제안하는 것은 좋은 設計圖書를 선정하여 원하는 사무실에 배부해 달라는 것이다. 각종 건축잡지나 서적에 소개된 내용은 기껏해야 잉킹된 몇개 도면이고 사진 몇장에 불과하다. 이 내용으로는 타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자료로 이용하기 어렵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해당 건축사와 협의, 설계된 내용 전체를 교환할

> 건축사협회는 設計圖書나 신고받고 福祉會費, 實積會費나 접수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부만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사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적합한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 있게 해야 하겠다. 일전에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도서의 표준적인 작성방법을 보여주고져 발행한 도면이 있다. 그 내용은 디테일이나 상세한 내용도 많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글자와 숫자들이 글자판에 의해 써져 있어 실제 사무실에서 작성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내용을 발간하기 보다 일선사무실에서 작업한 실제의 내용을 선정, 인쇄하여 배포한다면, 잉킹한 도면만큼 깨끗하지는 않다하더라도 훨씬 더 작업내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圖書檢討라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건축사끼리 남이 설계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재검토 시킨다는 것은, 회원끼리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원래 목적이 너무나 무성의한 설계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다른 의사가 검토하여 하자를 가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한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을 변호사협회에서 나서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제도는 없다. 유독 건축사협회만 다른 건축사에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다. 건축사가 하나의 업무를 수주하여 설계를 완료한 내용은 전적으로 해당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비록 중간에 도서검토를 타건축사가 하였다 손 치더라도 검토한 건축사는 하등의 법적 책임이 없다. 이러한 제도는 회원 상호간 權利侵害뿐 아니라 불협화음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젊은 건축사로서 개업시 애로사항에 대해 넋두리 몇마디 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洋式建築 歷史가 그리 길지 않으며 60년대 이전까지도 전쟁후 복구 등으로 이렇다할 건축기술이 발전되지 못했다. 70~80년대에 들어 괜찮은 건축기술이 발전 보급됨으로써, 근래 15년 정도에 건축학습을 한 젊은 건축도들이 그나마 건축에 대해 어느정도 배웠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젊은이들이 개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福祉會 入會費란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선불을 요구하고 있어, 선배들의 사랑을 받기는 커녕 적극적인 排他를 당하고 있다. 처음 개업한 건축사는 업무를 수주하기 어려워 상당기간동안 사무소 경비와 인건비 부담마저도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젊은 건축사를 排斥하는 것이 기존 선배 건축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능력있는 사람을 사장시키게 되고, 결국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

건축사협회는 設計圖書나 신고받고 福祉會費, 實積會費나 접수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부만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사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적합한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도 협회 내부에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일부에 국한되어 몇몇 실무자나 소수의 임원이 모여 의논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실제 일선에서 뛰고있는 건축사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고, 學界, 業界, 建築主측과 수많은 관련 분야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한다.

좀 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차례의 公聽會, 自由討論會 등을 갖고 앙케이트등을 실시, 광범위한 의견을 조사하여 국내 건축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좋은 해결책을 조속히 수용하여 실무에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우리 건축계에 건축사협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建築士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관련 官公署와 建築主에게도 상당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건축사 개인의 소양과 양심을 개선하기 어려우며, 관공서와 건축주에게 문제해결을 미룰 수도 없다.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이 모인 단체인만큼 직접, 간접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가장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이 글을 쓰며, 이 글로 인해 건축계 내부에 많은 의견들이 開陳되기를 바란다.